성주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『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』개정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,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

3. 주요내용

가. 법률 명칭, 용어 변경사항 반영

- 「성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「성주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로 변경함(안 제1조)
- 관련 법률명을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함(안 제1조 ~ 제2조)
- 옥외광고정비기금 ⇒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함(안 제1조)

나.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(안 제3조)

-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에 진흥에 활용토록 추가

다. 위원회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 신설(안 제6조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예고기간 : 2017.09.21. ~ 2017.10.1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』 개정에 따른 조례명칭 변경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,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『성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』에서 『성주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』로 변경하고, 각 조항의 용어 등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,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심의사항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『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』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개정에 따른 조례명칭 변경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·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